

제12차 한·일 학술토론회

# 한국 및 일본의 번호제도

(한국: 주민등록번호      일본: 마이넘버)

일 시: 2016년11월24일(목)

장 소: 부산지방세무사회관

부산지방세무사회/긴끼세리사회

# 목 차

## I 회장인사

- (1)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 2
- (2) 긴끼세리사회 회장 / 4

## II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 (1) 서설 / 6
- (2) 주민등록법 / 6
- (3) 주민등록번호와 행정의 효율화 / 10
- (4)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
- (5) 개인정보보호법 / 24
-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수칙 / 40
- (7) 주민등록법 전문 / 42

## III 일본의 번호법 제도

- (1)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세번호 제도 / 78
- (2) 세리사사무소에서의 안전관리조치 등. / 88
- (3) 특정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 104
- (4) 마이포탈의 개요 / 108

## IV 질문사항

- (1) 일본측에서 한국측으로 질문 / 120
- (2) 한국측에서 일본측으로 질문 / 130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입니다.

오늘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쁜중에서도 학술토론회를 위해 대한민국 부산을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991년부터 우호친선관계를 위해 교류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 후 세정 전반에 대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양 회 간에 관심 있는 테마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한층 더 성숙하고 충실한 친선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년 중요한 테마를 정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를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 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최상곤

## 인 사 말 씀

오늘 최상곤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곳 부산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님들께서는 제12회 학술토론회 개최에 즈음하여, 그 준비를 위해 각별한 수고를 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와의 우호관계는 1991년도에 시작되었고, 2005년도부터는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회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 및 일본에서의 번호제도」가 테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에 한정된 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귀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에 대하여, 특징이나 실무상 취급에 대하여 비교검토 해봄으로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국의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하여, 충분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중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의 상호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회에서도 노력 하나갈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 회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더 깊게 하고 뜻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상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6년 11월 24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아사다 츠네히로

#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

## 1. 서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5월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지만, 주민등록제도는 1942년도부터 시작된다. 즉, 1942년9월26일 朝鮮寄留令 및 기류수속규칙을 제정(1942. 9. 26 制令 제32호)하여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주1)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1962년1월15일 제정된 寄留法(법률 제967호)에서는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하도록(임의신고)하였고, 임의신고로 인하여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 가능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높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이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1년3월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년9월30일부 시행)되었고, 2013년8월6일에는 동법을 개정(2014년8월7일부 시행)하여 주민번호에 한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시켰으며, 동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행정을 효율화시키며 주민의 편리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역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1)일본통치시대의 행정구획의 호칭이다. 부는 현재의 「시」, 읍은 인구 2만부터 5만까지의 소도시를 말하며, 면은 현재의 「촌」에 해당 한다.

## 2. 주민등록법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된 법률(1962. 5. 10. 법률 제1067호 제정)이다.

### (1) 주민등록법 정의 및 연혁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일부 개정 2009.4.1 법률 제9574호).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2년5월10일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에는 朝鮮寄留令 및 기류수속규칙을 제정(1942. 9. 26 制令 제32호)하여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1962년1월15일 제정된 寄留法(법률 제967호)에서는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하도록(임의신고)하였고,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 가능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 (2) 주민의 등록 및 정정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하며,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신고는 세대주 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3) 신고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다만 이중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 (4) 주민등록사항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6) 주민등록증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 3. 주민등록번호와 행정의 효율화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하고, 편리성을 제고시키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즉, 행정기관과 각종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업무연계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수속의 간소화로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1)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제도에는 연금, 노동, 의료, 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보험을 취급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 노동청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급여 등을 기입하게 되며, 매월 원천징수 된 국민연금 등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2) 의료제도와의 관계

개인이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한 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및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음의 목적에 따라 수집 및 이용, 제공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진료, 건강검진, 예약 조회 및 진료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 진료비청구, 수납, 환불 등의 원무서비스
- 진료비계산서, 내역서, 제증명서 발송
- 온라인/오프라인 검사 수탁, 외부검사의뢰
- 교육,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자료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명기된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등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자의 동의하에 정보제공 및 취급위탁업체에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에 명시되는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진료신청서 내 기재항목(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3)조세제도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임금대장”작성 시,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기입하여 신고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서 용지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납세사실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도 좋은지 확인한 후 비공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하여 발급, 교부해 줍니다.

2)비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 예를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개인의 생년월일 및 성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사이트는 거의 예외 없이 회원가입 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의 실명을 숨기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팅사이트와 게임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개별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료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법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관련 국외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과 문제점 및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관련 국외 현황

### 1) 주민등록번호 체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의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5년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의 숫자체계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담고 있는 개인정보를 살펴보면 앞의 여섯 자리 숫자는 생년월일을 나타낸다. 뒤의 7자리 숫자 중 맨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도와 성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이 부여된다.

두 번째 자리부터 다섯 번째 자리까지의 네 자리 숫자는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의 고유번호이다. 여섯 번째 자리는 신고순위이다. 즉, 신고당일 같은 지역의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들 중에 몇 번째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숫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증명해주는 오류수정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640713-1018439 라고 가정하자. 이 중에서 맨 뒷자리 수(9)를 빼면 나머지 번호 640713-101843이 남게 된다. 각 번호 별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하고(즉 $6*2, 4*3, 0*4, 7*5, 1*6, 3*7, 1*8, 0*9, 1*2, 8*3, 4*4, 3*5$ ), 각각의 합을 더하면

(즉 $12+ 12,+ 0+ 35+ 6+ 21+ 8+ 0+ 2+ 24+ 16+ 15$ ) 151이라는 값이 나온다.

151를 11로 나누면 몫이 13, 나머지가 8이 나오는데, 몫을 버리고 11에서 8을 다시 빼준다(즉,  $11-8=3$ ). 이렇게 해서 나온 3이라는 숫자가 주민등록번호의 맨 뒷자리 번호와 일치해야만 이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른 번호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3은 위에서 가정한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9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주민등록번호는 허위이다.

## 2) 국가신분제도에 관한 국외 현황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고유번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도 신분을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 중 전국민신분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전국민신분증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전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전국민 신분증 제도는 카드 자체의 일련번호만을 부여하고, 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면 일련번호 자체가 변경된다. 미국은 주거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다. 출생, 사망, 혼인 등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고 개인별로 기록되므로 철저한 사건별·개인별 기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를 나타내는 각 3자리 숫자 총 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주민등록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과 문제점

###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회원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이다. 그러나, 피도용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 3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피도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수십 종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다운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셋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과 관련이 있다.

##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들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도용되면 그만큼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의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3)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 제도

### 1)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차 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

넷 무료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거나, 유료사이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상 동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는 해킹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시키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며,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법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4)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개선방안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무료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도용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를 찾아내기를 원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IP 추적 등을 통해 도용자를 찾아내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하려면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프로파일링(profiling)하는 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명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매칭(matching)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개인의 생년월일 및 성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별 생각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무료사이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나 예금결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무료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타겟마케팅에 필요한 이름과 아이디, 주소와 연령대, 직업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그 정보의 정확성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유료사이트 또는 금전거래가 주축인 사이트도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쇼핑몰이나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대출, 보험, 은행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외한 무료사이트의 경우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게임·채팅사이트의 경우에는 도용자의 대부분이 초·중·고생임을 감안하여 처벌규정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처벌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자는 피도용자의 친족이나 지인 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전문 7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제9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제2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34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제35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4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추진경과

##### 1)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한해 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탈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접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3) 추진경과

- ①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 9. 30)
- ②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3. 8.6 개정, 2014. 8. 7 시행)
- ③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4. 3. 24 개정, 2016. 1. 1 시행)
- ④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 기능강화(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 ⑤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2016. 3. 2 의결)

#### (2) 개인정보 관련 타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야의 일반법이다. 그러므로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즉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를 규율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 개인 등이 모두 적용대상자이다.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즉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고등교육법, 보험업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우선한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조문별로 개별법을 적용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으로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를 포괄 규율하고 있다는 말이다.

### (3) 법률 적용대상 및 범위

- 1) 법 시행 이전에는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적용하였다.(약 51만)  
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여행사, 백화점 등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이 있었다.
- 2) 법 시행 이후에는 적용대상이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러므로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360만 사업자 및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등 20만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자이다.
- 3) 적용범위는 전자파일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수집이용(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1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위원회 기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심의의결과 오·남용 감시, 이행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2) 심의의결사항

- ①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시행계획
-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공공기관간의 의견 조정
-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운용
-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 ⑥ 기타 관계 법령과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
- ⑦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과 국회보고
- ⑧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제기한 사항



### 3) 조사연구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 ②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 등 조사·분석
- ③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주요동향 연구
- ④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 (5) 주요개정사항

#### 1)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2016.3.29)

##### \*법 개정 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법 24조)

- 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법 개정 후

법24조의 2 신설,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

-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법 제24조의2 제1항 1호)
-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 ③ 위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3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이 근절되도록 근거 법령 일제정비 추진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이 근절되도록 근거 법령 일제정비 추진하여 주민번호 요구 법정서식 정비 등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근절

#### 2) 주민번호 의무적 암호화(2016.1.1)

##### \* 법 개정 전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아래의 경우 의무적 암호화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 ②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에 저장하는 경우
- ③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여부 및 수준을 선택적 적용 가능하다.

\* 법 개정 후

주민번호는 보관 시 의무적 암호화 조치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2항)

①100만명 미만 주민번호 보관 : 2016.12.31.까지 암호화(2017.1.1.적용)

②100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관 : 2017.12.31.까지 암호화(2018.1.1.적용)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미 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016.7.25.)

법정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39조, 제39조의2)

<양 제도 비교 및 도입방안>

구분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요건	기업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발생
입증책임	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구제범위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배상규모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이후 유출 사고	

4) 개인정보 출처고지 의무화(2016.3.2)

\*법 개정 전

①민감정보는 고시에서 바이오 정보만 암호화 의무

②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의무만 부과

③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요구 있으면 출처 고지 의무

④주민등록번호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법 개정 후

①민감정보는 모두 반드시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행자부가 정기적으로 감독

③3차 제공, 위탁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화

④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가능(시행규칙 제외)

## (6) 개인정보 환경

### 1) 유출, 침해의 초 대량화

개인정보 대량집적에 따라 유출사고도 초 대량화(1~2천만건)되고 있고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 대상인 시대이다.

### 2) 새로운 기술환경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가 이슈화 되고 있다.

### 3) 개인정보 취급분야 확대

기존의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4) 정보 주체의 인식 변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 (7) 개인정보 정의

개인 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주민번호, 영상정보, 음성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e-mail 등도 포함한다. 즉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8)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

다음 각 호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동의 획득 시 고지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 5)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1)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법 제30조제1항, 영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사항>

- ①개인정보 처리목적
- ②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③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④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⑤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⑥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 ⑦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⑧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불가시 공개방법 (영 제31조제3항)>

- ①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②관보, 신문 게재
- ③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간행물, 소식지 등에 게재
- ④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게재하여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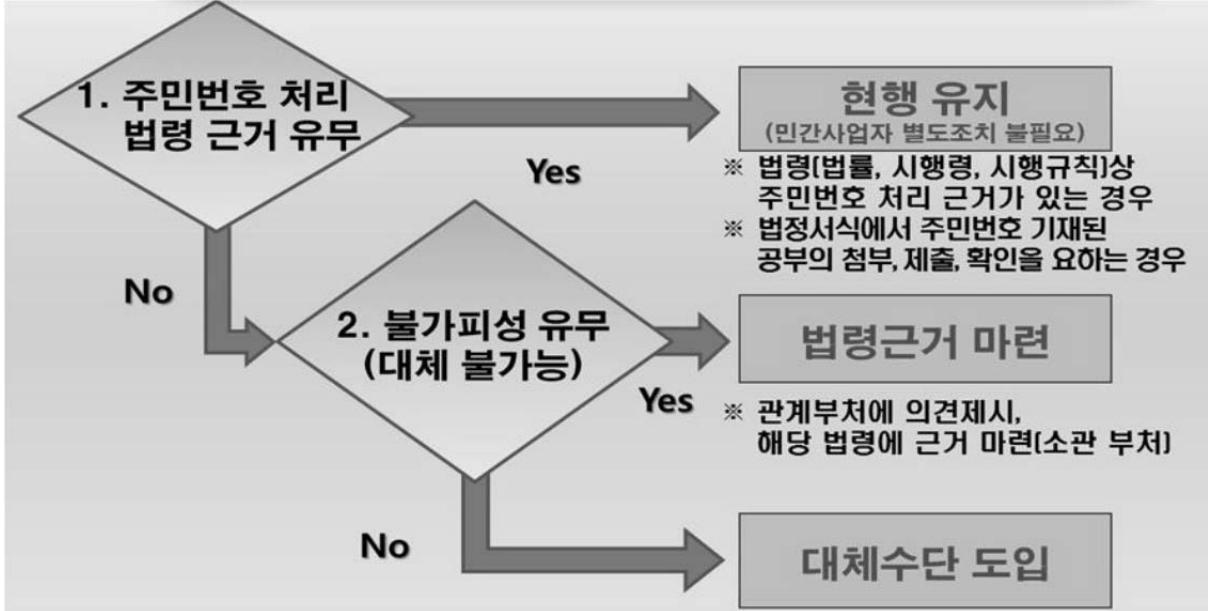
### 3)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13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국민카드는 유출행위가 2회여서 가중처벌 되었음

◆ 참고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

1. 주민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 금지 :미수집 또는 대체수단 도입 등
2. 불가피한 경우 법령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이용



◆ 참고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 사례

※ 직원 채용 시 주민번호 처리

사례		근로계약 체결 위해 주민번호 처리
검토	1.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법령근거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4대 보험 가입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 시,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 위하여 임직원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 명시적 규정
	2. 불가피성 유무	불가피성 있음 ⇒근로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직원 주민번호 처리는 불가피
조치사항		별도조치 불필요 (현행유지) ※ 채용 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번호 처리 가능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10)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 법 개정(2016.1.1 시행)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번호는 내/외부망에 저장 시 암호화(법 제24조의2)

1) 주민번호는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내/외부망에 저장 시 암호화 조치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 처벌 규정 : 주민번호 미 암호화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 암호화에 따른 주민번호 유출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령 개정안 제21조의2)

①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②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수칙

### <사업자 준수사항>

(1)개인정보는 동의 받아 수집하세요

회원, 멤버십 가입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으시고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서비스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세요

개인정보는 서비스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만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3)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위탁사실을 공개하세요

대리점, 위탁점, 콜센터 등 외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5)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관하세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또는 잠금장치 등을 마련합니다.  
⇒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부관리계획 수립면제

(6)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주민등록법

[2017.5.30] [법률제14191호, 2016.5.29,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감독 등)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

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 제5조(경비의 부담)

-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 ③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헌법불합치, 2013헌바68, 2015.12.23.,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시행일 : 2017.5.30.] 제7조

####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



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2

####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3

####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4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⑨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⑩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⑫ 변경위원회와 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5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④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목개정 2007.5.17.]

####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제목개정 2007.5.17.]

####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1.21.]

####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⑥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 2016.11.30.] 제29조

####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3조 삭제 <2009.04.01>

####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다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2008.2.9 2013.3.23 2014.11.19>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작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1월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1월1일[본조신설 2016.05.29]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36조의3

###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36조의4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 2016.11.30.] 제37조제5호

####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2008.12.26.]

####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40조



## I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세번호제도의 개요

### 1. 개 요

「행정수속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번호법」이라고 한다.) 이 2013년 5월에 성립하고, 2014년 3월말에 번호법 시행령이 실시되었다. 201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통지되었고, 2016년 1월부터 번호의 이용이 개시되었다.

이 번호법은, 행정기관 등이 주민표를 소유하는 개인에 부여된 개인번호, 법인 등에 부여된 법인번호를 활용함에 따라, 사회보장·세금 및 재해대책의 분야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편리성을 높이고, 공평·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1) 행정운영의 효율화

번호를 이용함으로써, 행정 기관이나 지방 공공단체 등에서 정보의 대조, 전기, 입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동력이 대폭 삭감된다.

또한, 복수의 기관이 정보제휴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중복되었던 작업의 낭비를 없앨 수 있다.

#### (2) 국민의 편리성 향상

개인번호에 의해, 행정수속할 때 제출하였던 첨부 서류를 삭감할 수 있는 등, 행정수속이 간소화되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행정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3) 공정·공평한 사회의 실현

개인번호에 의해, 국민의 소득이나 행정 서비스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세나 사회 보장의 부담을 부당하게 모면하거나 부정수급의 방지, 더 나아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해진다.

### 2. 번호의 부여

#### (1) 개인번호의 부여

개인번호는, 시읍면장으로부터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12자리의 번호를 지정하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및 개인번호를 기재한 「통지카드」에 의해 통지된다.

이 개인번호는, 일본 국내에 주민표를 소유하는 사람 전원이 번호부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국적이어도 중장기 체류자나 특별영주자에게도 번호가 부여된다. 반대로 일본인이라도, 번호법을 시행할 때 국외에 체류하여 주민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번호가 부여 되지 않는다.

(2) 법인번호의 부여

국세청장관은 ①설립 등기 법인 ②국가기관 ③지방 공공단체 ④기타의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등으로 법인세·소비세의 신고 납세 의무 또는 원천징수 의무 있는 단체에 13자리의 법인번호를 지정한다.

또한,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등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국세청장관에게 신고함으로서 법인번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인번호는, 1 법인에 대하여 1번호(법인의 지점, 사업소 등은 지정되지 않는다.)만 지정된다.

법인번호는, 설립 등기 법인에 대해서는 등기되어 있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번호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기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등은, 당해 신고서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3. 번호의 이용 분야

(1) 개인번호의 이용 분야

개인번호는 그 이용 분야가 번호법에 의해 「사회 보장·세 및 재해대책 분야」에 관한 사무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개인번호 이용 분야		
사 회 보 장 분 야	연금분야	연금 자격취득·확인,급여를 받을 때 이용
	노동분야	고용보험 등의 자격취득·확인,급여를 받을 때 이용 해로우 워크 등 고용 사무소 등에 이용
	복지·의료· 가타 분야	의료보험등의 보험료 징수 등 의료보험자의 수속에 이용 복지분야의 급여를 받을 때에 이용 생활보호의 실시 등에 이용 저소득자 대책사무 등에 이용
	세분야	국민이 세무당국에게 제출하는 확정신고서, 신고서, 조서 등에 기재 당국의 내부사무 등에 이용
	재해대책 분야	재해 피해자 대장 작성에 관한 사무에 이용 재해 피해자 생활재건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에 이용

➢ 상기 외 복지, 보건 또는 의료 기타 사회보장, 지방세 또는 방재에 관한 사무소외에 유사한 사무이며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이용(제9조 제2항).

장래적으로는 이용분야의 확대도 생각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분야이외에는 개인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범위에는 「개인번호 이용사무」 및 「개인번호 관계사무」가 있다.

#### ① 개인번호 이용사무

「개인번호 이용사무」란, 국가의 행정 기관, 지방 공공단체 등 (이하 「행정 기관 등」이라고 한다.)이, 사회보장·세 및 재해대책에 관한 특정한 사무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검색·관리를 위해서 개인 번호를 이용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 「개인번호 이용사무」를 하는 사람을 『개인번호이용 사무실시자』라고 한다.

#### ② 개인번호관계 사무

「개인번호관계 사무」란, 사업자가 법령에 의거해서, 종업원 등의 개인번호를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표, 지급조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의 서류에 기재하고, 행정 기관 등 및 건강보험 조합등에 제출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 「개인번호관계 사무」를 하는 사람을 『개인번호관계 사무실시자』라고 말한다.

※위탁을 받아서 「개인번호이용 사무」또는 「개인번호관계 사무」를 하는 사람도, 각각 『개인번호이용 사무실시자』, 『개인번호관계 사무 실시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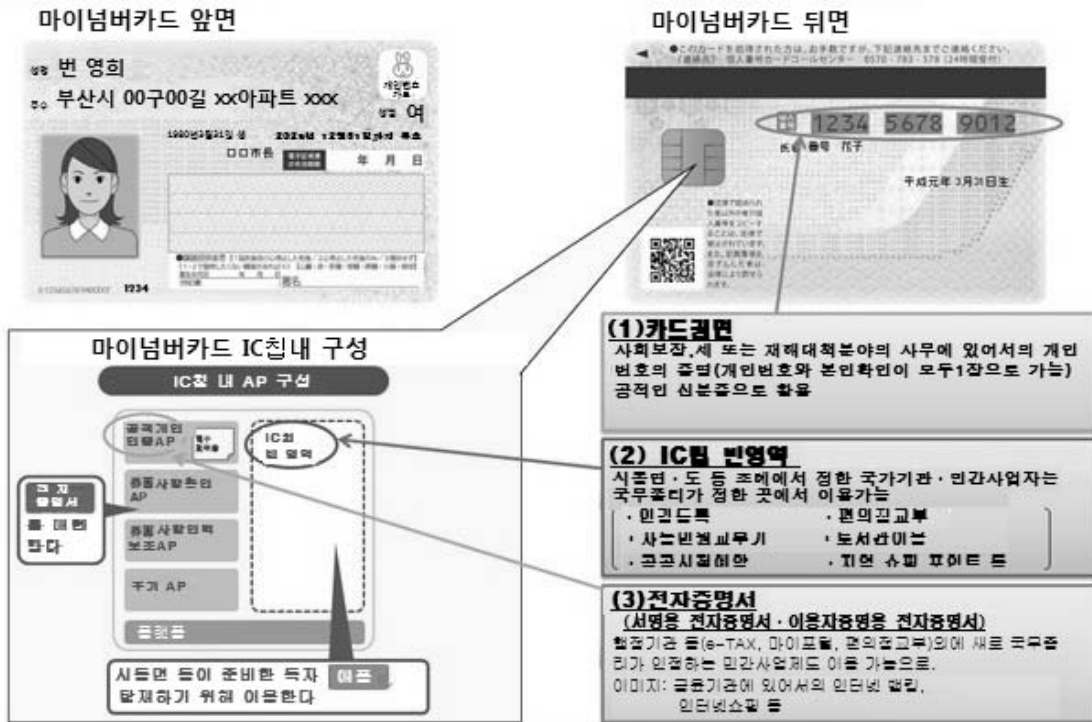
### (2) 법인번호의 이용 분야

개인번호는 이용 분야가 한정되고 있지만, 법인번호는 개인번호와는 달리 이용 분야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기본 3정보」 (①상호 또는 명칭, ②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법인번호)가 공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4. 개인번호 카드

개인번호 카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며, 표면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기본4정보)과 얼굴 사진이, 이면에는 개인번호와 이들 정보 등이 기록된 IC칩이 부착된 카드다.

이 개인번호 카드에는, 크게 나누어서 3개의 이용 개소를 들 수 있다.



(1) 카드 권면에 의한 이용  
표면은 금융기관등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신분증으로서, 이면은 개인번호의 제시를 요구받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2) IC칩의 미사용 영역 이용  
개인번호 카드의 IC칩에는 미사용 영역이 있어, 자치단체 등이 조례로 정하는 독자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도서관 카드, 인감등록증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편의점 등에서 증명서 자동발급기에 의한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공적인 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전자 증명서의 이용  
개인번호 카드에는, IC칩에 「서명용 전자 인증서」와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

서」라고 하는 공적인 개인인증 서비스에 따른 두개의 전자 증명서가 표준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e-Tax등의 전자신고 등을 할 경우에 사용하고, 이용자 증명용 디지털 인증서는, 마이나포털이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 5. 번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조치

번호법은, 사회 보장·세 및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복수의 기관 사이에 연결고리로 되어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조회나 정보의 연결을 신속히 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번호의 부정이용 등에 의한 개인의 권리의익의 침해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거기에서 번호법에서는, 특정개인정보(개인 번호를 그 내용에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엄격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보호 조치는, (1)특정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2)특정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조치 등, (3)특정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등 3개로 크게 구별된다.

### (1)특정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번호법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사회 보장·세 및 재해대책에 관한 특정한 사무에 한정하고 있다. 가령,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본래의 이용 목적을 넘어서 특정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또, 특정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파일(특정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 (2)특정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조치 등

번호법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번호에 대해서 필요와 동시에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번호 및 특정 개인정보 (이하 「특정 개인정보 등」이라고 한다. ) 의 취급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처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에 의한 재위탁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탁자의 재위탁처에 대한 간접적인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3)특정 개인정보등의 제공 제한 등

번호법에서, 특정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이용 제한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경우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개인번호의 제공을 구하거나, 반대로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또, 특정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번호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번호의 제공을 받는 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본인확인」이란 제공을 받은 개인번호가 본인에게 관련되는 것임을 확인(개인번호확인)함과 동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신원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리인에 의한 제공은 추가로 대리권의 확인도 해야한다.

## II 세무사사무소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치 등

### 1. 세무사의 자리매김

세무사는, 아래의 사무를 할 경우에 개인번호를 취득해 이용한다.

(1) 자기의 세무사사무소의 종업원 등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작성, 건강보험·후생연금사무 및 노동보험사무를 하기 위해서 종업원 등(종업원 등의 부양친족을 포함한다.)의 개인번호를 취득하고, 원천징수표 등에 그 개인번호를 기재하여 행정기관 등이나 건강보험조합 등에 제출하는 사무를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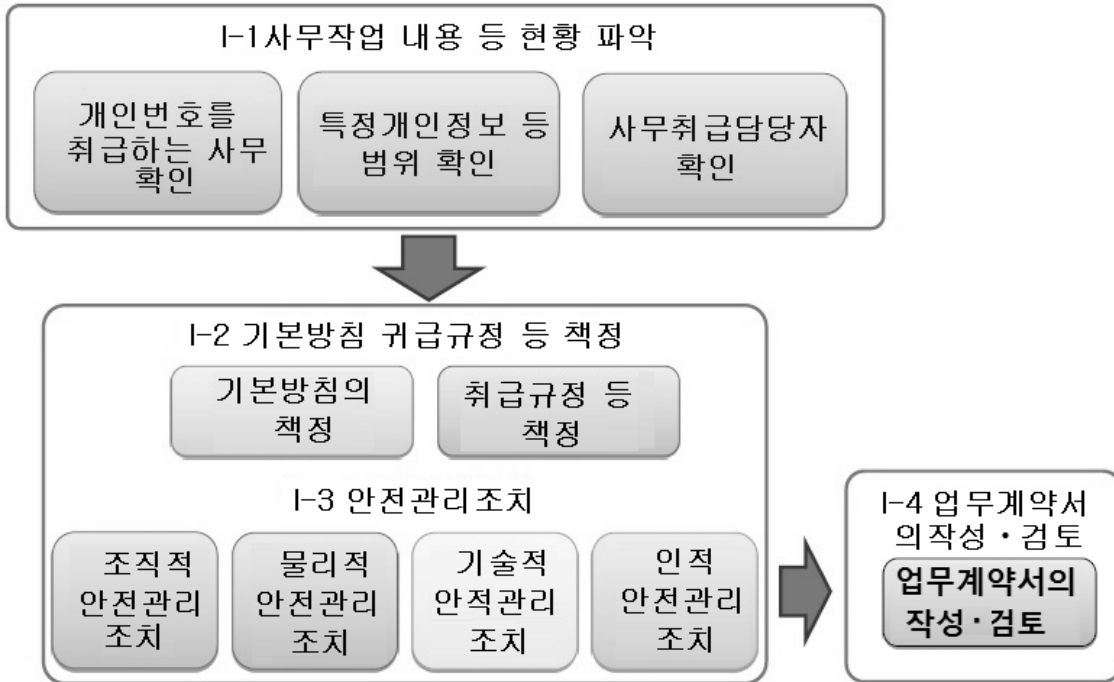
(2) 업무위촉 계약 등에 근거해 고문처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작성 사무를 하기 위해서 고문처의 종업원 등(종업원등의 부양친족을 포함한다.)의 개인번호를 취득하여, 원천징수표 등에 그 개인번호를 기재하고 행정 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무를 할 경우.

(3) 업무위촉계약 등에 의거해서 부양친족이 있는 개인의 소득세확정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그 개인의 부양친족 개인번호를 취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개인과 그 개인의 부양친족 개인번호를 기재하여 행정 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무를 할 경우.

이렇게 세무사는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 또는 위탁에 의해 개인번호를 취급해 「개인번호 이용 사무실시자」에 제출하는 사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번호 관계 사무실시자」가 된다. 따라서 세무사는, 특정 개인정보등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 등, 특정 개인정보 등의 관리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전제로 한 세무사사무소의 체제를 정비하고, 사무작업의 흐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세무사사무소의 체제정비 흐름  
**준비작업의 흐름**



(1) 사무작업 내용 등의 현황 파악

개인번호를 적정하게 다루기 위한 세무사사무소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황의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세무사사무소에 있어서 개인번호를 다루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취급하는 특정 개인정보등의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번호를 다루는 사무의 담당자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특정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취급되도록, 조직으로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개인번호를 다루는 사무, 특정 개인정보등의 범위, 사무취급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흐름을 정리하고, 특정 개인정보등의 구체적인 취급을 정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정보취급규정」을 책정 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방침 또는 취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 등에 대해서 추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내용도 재검토 한다.

«참고»

- ①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에 관한 기본방침에 정해진 항목
- 세무사사무소명
- 관계 법령·가이드 라인 등의 준수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질문 및 불평처리의 창구등

②특정 개인정보취급규정에 정해진 항목

개인번호의 a. 취득, b. 이용, c. 보존, d. 제공, e. 삭제·폐기를 하는 단계마다

·취급방법

·책임자·사무취급담당자

·임무 등

·안전관리조치 등

### 3. 세무사사무소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있어서 전술한 기본방침의 책정 및 취급 규정의 책정 외에, (1)조직적 안전관리조치, (2)물리적 안전관리조치, (3)기술적 안전관리조치, (4)인적안전관리조치의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설과 수법이 제시되어 있다.

#### (1)조직적 안전관리조치

사무책임자 및 사무취급담당자의 명확화, 보고 연락 체제, 취급규정에 의거 운용 상황 및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 및 정보누설 등의 발생에 대비한 체제정비 등의 안전관리조치를 말한다.

##### ① 조직 체제의 정비

세무사사무소는,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임하는 체제를 정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특정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를 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 복수의 부서에서 취급할 경우에는, 각각의 부서의 임무 분담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또, 사무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담당하는 사무에 한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 ② 취급규정에 의거 운용 상황을 확인하는 수단을 정비

취급규정에 의거하여 개인번호를 다루는 사무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수단으로서, 「세무사를 위한 마이넘버 대응 가이드북」에 게재되어 있는 「취급규정에 관한 사무소관리 체제 체크 리스트」등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취급규정에 의거 운용상황을 기록·확인하기 위해서 집무 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책임자가 확인하여, 운용 상황의 적정성을 유지한다. 한편, 집무기록 등에는 특정 개인정보 등의 기재는 하지 않는다.

##### ③ 취급상황을 확인하는 수단정비

특정 개인정보의 파일 등의 취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정보 파일의 종류·명칭, 책임자·취급부서, 이용 목적, 삭제·폐기상황, 액세스권(접속



권한)을 가진 자 등을 기재한 관리부를 정비하고, 책임자와 사무취급담당자를 명확히 함으로서 부정방지를 도모한다.

한편, 관리부에도 특정 개인정보는 기재 하지 않는다.

회계 소프트나 정보시스템에 부가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system log 등을 기록·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④ 정보누설 등의 사안에 대응하는 체제의 정비

정보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징후를 파악한 경우에는, 적절·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미리 정보누설 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의 대응방법을 결정해 놓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자에의 보고, 사실 관계의 조사 및 원인규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에의 연락, 재발 방지책의 검토 및 결정, 사실 관계 및 재발 방지책 등의 공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등에 보고 등을 정해 놓고 적절·신속히 대응한다.

#### ⑤ 취급상황의 파악 및 취급규정 등의 재검토

특정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토, 개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부 및 집무 기록 등으로 취급상황을 파악하고, 취급규정 등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물리적 안전관리조치

특정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역의 관리, 기기 및 전자매체등의 도난방지책, 전자매체등을 외부에 반출할 경우의 누설 등의 방지, 개인번호의 삭제, 기기 및 전자매체등의 폐기 등, 특정 개인정보등의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관리조치를 말한다.

#### ① 특정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역의 관리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취급담당자가 사무작업을 하는 구역 (이하 「취급구역」이라고 한다. ) 및 정보시스템, 기기등을 관리하는 구역 (이하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 를 명확히 하고, 될 수 있는 한 사무취급담당자이외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세무사사무소 에서는, 모든 직원이 사무취급담당자가 되는 것이 예상되며, 사무소에 있어서의 사무작업 구역의 모두가 취급구역 및 관리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칸막이 등의 설치나 사무작업 담당자이외 사람의 왕래가 적은 장소에 좌석배치를 하는등, 외부 내방자등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내객과 사무작업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② 기기 및 전자매체등의 도난등의 방지

종이 베이스의 서류는 물론, 특정개인정보등을 다루는 기기 및 전자매체

등은 적절하게 관리·보관하고,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대책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개인정보등을 포함한 서류, 기기 및 전자매체등은, 잠글 수 있는 데스크나 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또, 보안 wire 등에 의해 PC 등을 고정하는 것도 생각된다.

### ③전자매체등을 외부에 반출할 경우의 누설 등의 방지

특정 개인정보등이 기록된 전자매체등이나 서류를 취급구역 또는 관리 구역의 밖에 반출할 경우는, 분실·도난등에 유의함과 동시에, 전자매체 등의 경우는, 비밀번호에 의한 보호, 데이터의 암호화, 잠글 수 있는 반송 용기를 사용 하는등의 안전방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서류의 경우도, 봉입 또는 개인번호에 눈가리개 스티커를 부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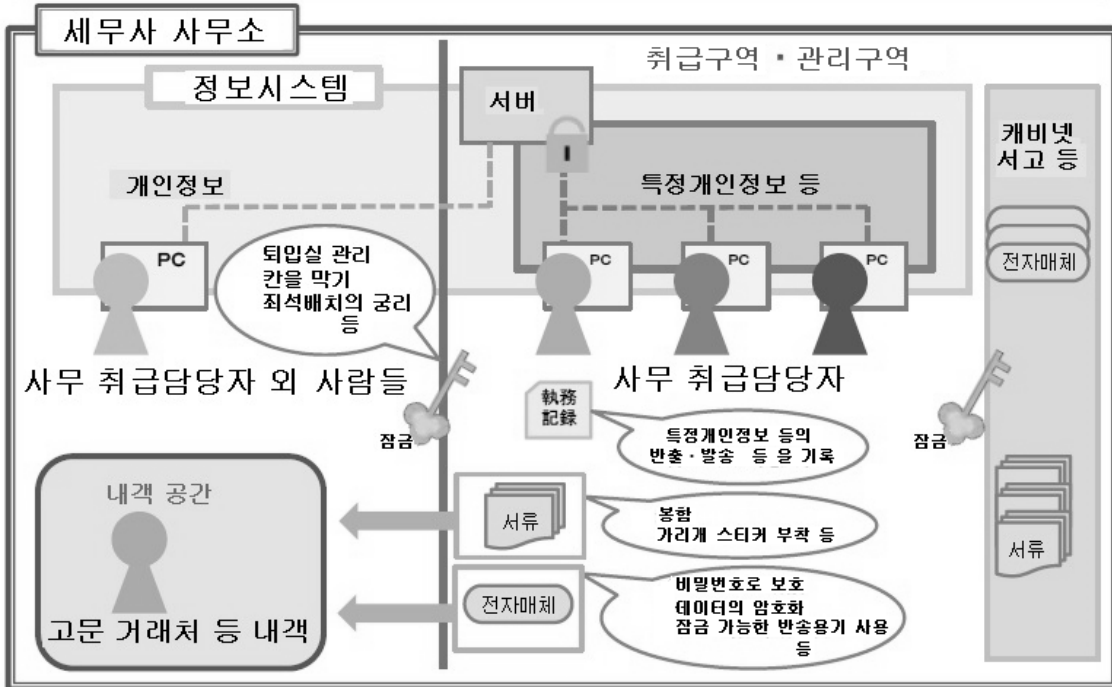
### ④개인번호의 삭제

개인번호는, 번호법에서 한정적으로 명기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수집 또는 보관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고, 소관 법령에 정하는 보존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개인번호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없는 수단으로 삭제 또는 폐기 해야 한다.

서류의 경우라면, 전문업자에게 의뢰해 소각 또는 용해 등의 복원불가능 한 방법에 따르거나 복원불가능한 상태까지 절단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를 사용한다. 기기·전자매체등에 대해서는, 전용 데이터 제거 소프트에 의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문업자에게 의뢰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폐기한다.

한편, 전문업자에게 의뢰했을 경우에는 삭제 등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보관한다.

## 사무실 레이아웃 등 재검토



### (3) 기술적 안전관리조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개인정보등을 다룰 경우에, 적절한 액세스 제어를 하고, 정보시스템을 외부에서의 부정 액세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데이터의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안전관리조치를 말한다.

#### ① 정보시스템의 액세스 제어 및 액세스자의 식별과 인증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번호관계 사무를 할 경우, 개인번호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정보의 범위,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액세스 제어에 의해 한정하고, 특정 개인정보 파일 취급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사용자ID 등에서 액세스권을 부여해 사무취급담당자로서 한정한다. 이 경우, 사무 취급담당자가 정당한 액세스권을 가진자인 것을 식별하고,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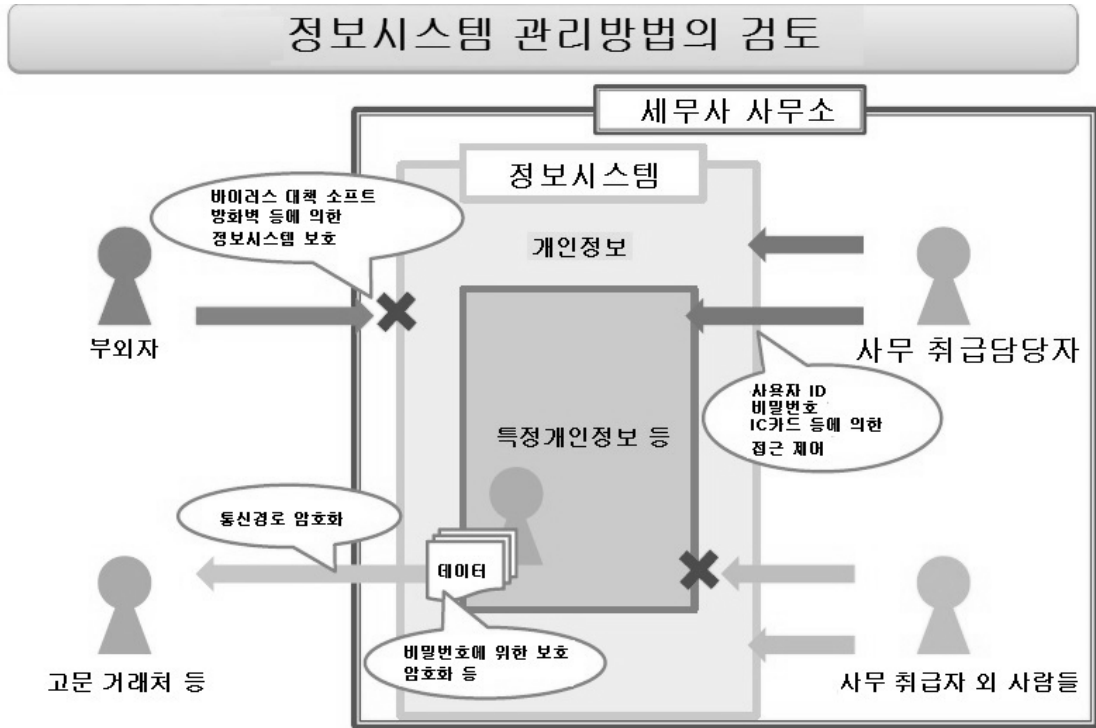
#### ② 외부로부터 부정 액세스 등의 보호

정보시스템을 외부에서의 부정 액세스 또는 부정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a.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에 표준장비로 되어 있는 자동 갱신 기능의 활용, b. 바이러스 대책인 보안 소프트웨어의 도입, c.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속 장소에의 파이어월 등을 설치해 부정 액세스를 차단, 보호하는 구조를 도입해 적절하게 운용한다.

#### ③ 데이터의 정보누설 등을 방지

특정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의해 외부에 송신할 경우, 데이터의 비밀번호에

의한 보호 또는 데이터의 암호화 및 통신 경로의 암호화 등을 함으로서, 통신 경로에 있어서의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4)인적안전관리조치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규정에 근거 적정한 취급을 하도록, 사무취급담당자에게 교육 및 감독을 하고, 사무소 전체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 ①사무취급담당자에 대한 교육

사무취급담당자가 변호법의 이해를 깊게 하고,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 허가 사항, 금지 사항, 그 이유등에 대해서 주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적절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②사무취급담당자의 감독

개인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사용인의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 취급담당자가 특정 개인정보등에 관계되는 사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감독 해야 한다. 또, 세무사법 제38조에서의 비밀준수의무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같이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비밀준수의무에 의해, 세무사 및 종업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승낙 또는 법령에 의거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누설은 금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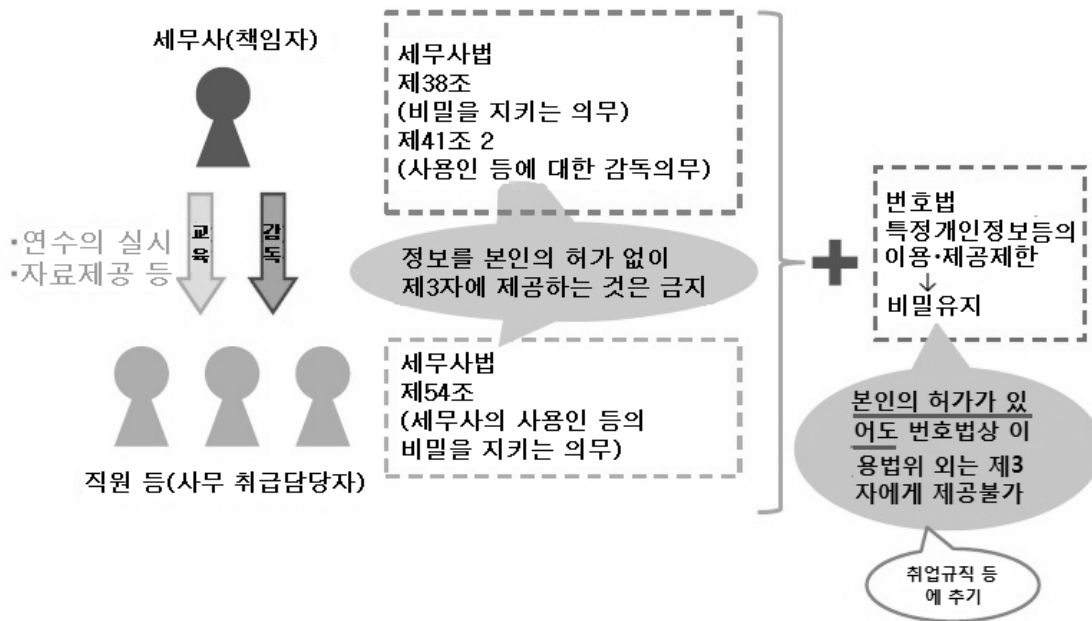
어 있지만, 변호법에서는 특정 개인정보등을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용 범위의에서의 이용이나 제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개인정보등에 대해, 세무사법상의 비밀준수의무보다 엄격·제한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세무사도 인식한다.

### ③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위와같이, 세무사사무소의 종업원은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변호법에도 특정 개인정보등의 취급에 엄격하게 제한이 걸려 있다. 세무사사무소의 종업원에 의한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취업 규칙 등에 특정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

종업원에게는, 고용계약 체결 시(이미 고용 관계인 사람은 변호법 시행시)에 서약서 등에 의해, 특정 개인정보등의 적정한 취급에 대해서 서약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사무 취급담당자에 대한 교육·감독



### Ⅲ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사사무소에서, 특정 개인정보등의 누설 등이 없도록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여 특정 개인정보등이 누설 되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등이 발각되었을 경우 강구해야 할 조치

사업자는, 그 취급하는 특정 개인정보(위탁받은 사람이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누설 등 기타 변호법 위반의 사안 또는 변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각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사업자내부에 있어서의 보고, 피해확대 방지

책임 있는 입장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동시에, 피해의 확대를 방지한다.

##### (2)사실관계의 조사, 원인의 규명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변호법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 한다.

##### (3)영향 범위의 특정

(2)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의한 영향의 범위를 정한다.

##### (4)재발 방지책의 검토·실시

(2)에서 규명한 원인을 근거로, 재발 방지책을 검토, 신속하게 실시한다.

##### (5)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에의 연락 등

사안의 내용에 대응하여, 2차피해의 방지, 유사 사안의 발생 회피 등의 관점에서, 사실 관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본인에게 연락하고, 또한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둔다.

##### (6)사실관계, 재발 방지책등의 공표

사안의 내용에 대응하여, 2차피해의 방지, 유사 사안의 발생 회피 등의, 사실 관계 및 재발 방지책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표한다.

#### 2. 보고

사업자는, 그 취급하는 특정 개인정보에 관한 변호법 위반의 사안 또는 변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사실 관계 및 재발 방지책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고시 제2호에 근거하여, 사업소 소관 주무 장관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이외의 사업자에 있어서, 다음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

- (1)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 모두에 연락했을 경우(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도 포함)
- (2) 외부에 누설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사실관계의 조사를 종료하고, 재발 방지책을 결정한 경우
- (4) 위원회규칙에 규정하는 중대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칙에 규정한 중대사태 등에 관한 보고

사업자는, 2 의 번호법 위반 사안 또는 번호법 위반의 우려 있는 사안 가운데, 특정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된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 기타 특정 개인정보의 안전확보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중대사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하다. 또, 중대사태에 해당하는 사안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각된 시점에, 즉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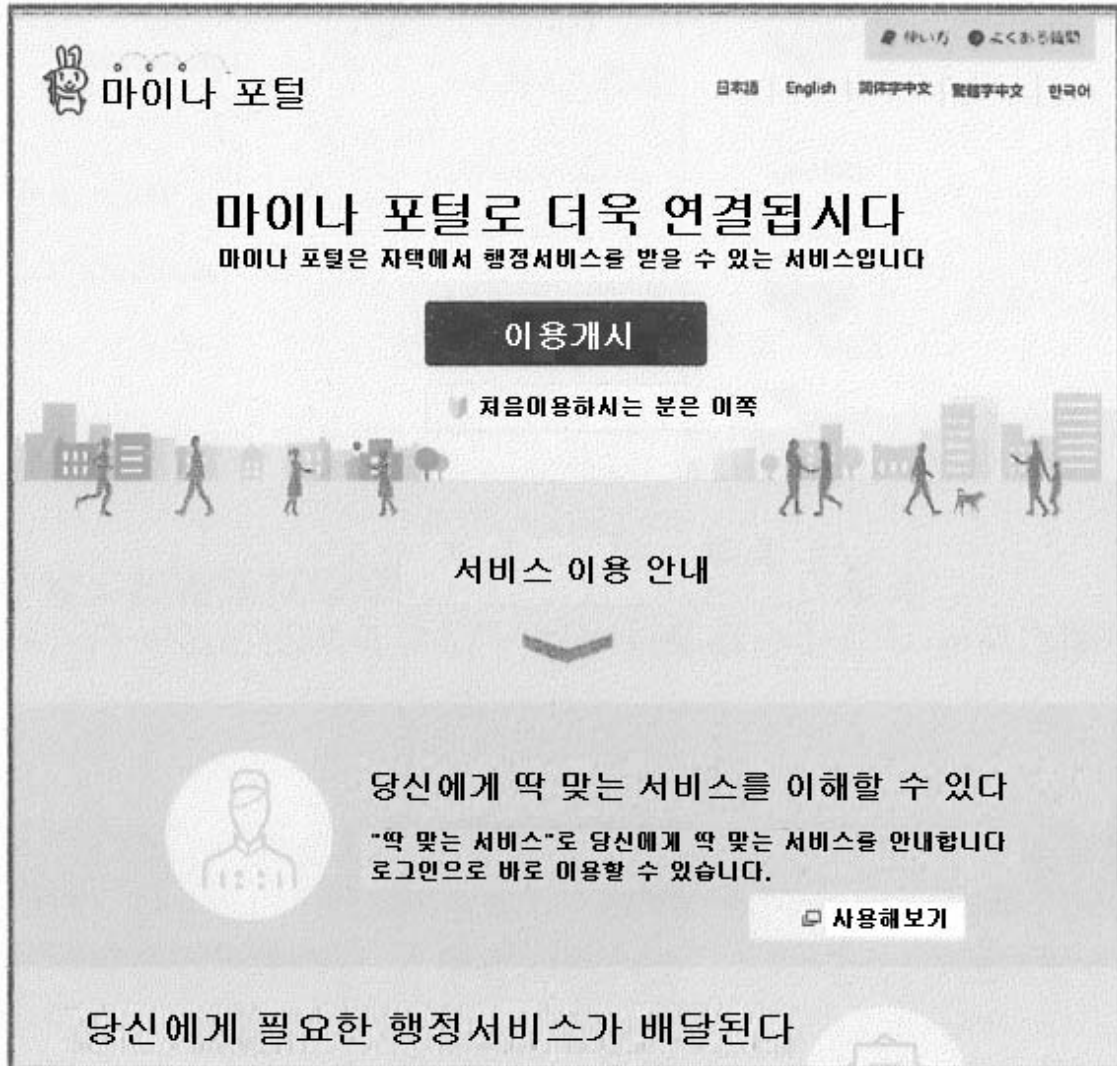
《중대사태》

- (1) 누설 등을 한 특정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본인의 수가 100 명을 넘을 경우
- (2) 특정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된 특정 개인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동시에 열람되었을 경우
- (3) 부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된 특정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보고 내용》

- (1) 개요 및 원인
- (2) 특정 개인정보의 내용
- (3)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4) 위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IV 마이나포털의 개요에 대해서



##### 1. 마이나포털이란

번호법에 근거하여, 마이 넘버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인터넷에 의한 행정 서비스로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 페이지로, 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등이 이용자의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 주고



받은 것인지 체크할 수 있고, 자치단체등이 보유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나, 이용자에게 알맞은 중요정보를 자택의 PC로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행정 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의 신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 온라인 결제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게다가, 민간의 전자송달 서비스와 제휴하여, 확정 신고 등을 할 때에 필요한 생명 보험료 공제나 기부금공제증명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원 스톱 서비스」를 실현한다.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 2. 마이나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나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 (1) 마이넘버카드(이용자 증명용 디지털 인증서를 탑재한 것)

마이나포털에 로그인할 때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2) IC카드 리더

마이넘버카드를 읽어내고, 인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3) PC

마이넘버카드를 인증하고, 마이나포털의 열람이나 정보청구의 작업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2017년 1월이후, PC 이외에도 순차 NFC 대응의 Android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편의점 단말, CATV 로부터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 3. 마이나포털을 이용하기 위한 어카운트 설정에 대해서

마이나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서 어카운트 정보의 등록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카운트 개설 신청을 해야한다.

### (1) 높은 보증 수준에서의 본인인증

마이나포털이용시에 하는 본인확인,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공적개인 인증서비스를 이용한다. 그 때문에 높은 보증 수준에서의 본인확인이 담보된다. 또, 이용자 증명용 디지털 인증서에 의해 본인확인을 함으로, 본인인체 하는 시늉을 방지한다.

### (2) 어카운트의 개설

마이나포털을 이용시에는, 어카운트의 개설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의 개설에는, 닉네임이나 메일 주소 등의 등록이 필요하며, 한사람에 대해서 1 어카운트만 개

설할 수 있다.

### (3) 이용 시작

어카운트 개설후에는, 로그인후에 톱 메뉴가 표시되며,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4. 마이나포털의 기능에 대해서

### (1) 「원 스톱 서비스」

원 스톱 서비스에 의해, 자신에게 있었던 서비스를 검색하고, 자치단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등 공공요금의 결제를, 자택에서 앉은 채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의 전자결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예 1》아동수당의 수속

#### ① 간단 검색

이용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수속서류를 간단히 검색할 수 있다.

#### ② 간단 온라인 신청

신청 폼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고, 【마이멤버카드】에서 전자서명해 신청한다.

#### ③ 푸쉬형 통지

아동수당인정 통지, 아동수당 지급통지 등 푸쉬형으로 각양각색의 알림 정보가 도착되어, 확인이나 제출시 잊어버릴 염려는 없다.

### 《예 2》공금결제 절차

#### ① 공금의 납부 의뢰·전자결제 안내의 통지

·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공금의 납부 의뢰, 전자결제의 안내를 마이나포털에 송신한다.

· 이용자는, 마이나포털의 「알림 표시 기능」에서, 공금의 납부 의뢰, 전자결제의 안내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전자결제

이용자는, 전자결제의 안내로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결제 등의 전자결제 기능을 통해서 공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③ 결제 정보·수납 정보의 통지

결제 정보는 결제 대행 사업자를 경유하여, 지방 공공단체 등에 수납 정보로서 송신된다.

#### ④ 영수증서의 통지

지방공공단체 등은 공금이 수납된 것을 확인한 후, 영수증서를 마이나포털에

송신한다.

이용자는, 마이나포털의 「알림 표시 기능」에서, 영수증서의 확인, 필요에 따라 영수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2) 「정보제공 등 기록 표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행정 기관끼리 주고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행정기관간에 수수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정보의 교환 이력(정보제공 등 기록)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사후에 회답을 받은 경우는, 등록된 메일 주소에 메일을 송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3) 「자기정보표시」

특정 개인정보를 스스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라도,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마이나포털에서는, ◇특정 개인정보명, ◇세금·사회보장·방재등의 분야, ◇생활보호 등의 분야를 상세하게 지정해 검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등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있다.

## (4) 「알림 정보표시」

### ①지방 공공단체로부터 알림

자치단체등으로부터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행정 서비스의 알림을 수신한다. 마이나포털에 등록된 메일 주소에 통지하도록 설정한 경우, 알림 수신시에 수신 통지 메일이 등록된 메일 주소에 송신된다.

### ②민간사업자로부터 알림

이용자는, 마이나포털의 알림 기능에서, 민간송달 서비스로부터 송신된 자료의 건명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림건명을 선택하면, 민간송달 서비스의 화면으로 바뀌고, 민간사업자(예: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로부터 송부된 자료(예: 생명 보험료 공제 증명서등)를 확인할 수 있다.

## (5) 「대리인관리」

이용자 본인을 대신해서 마이나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리인을 관리한다. 사전에 대리인을 등록해 둬므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마이나포털의

각종 서비스(정보제공 등 기록 표시, 자기정보표시, 알림 표시)를 이용할 수 있다.

#### (6) 「외부 사이트와의 제휴」

외부 사이트를 등록함으로써, 마이나포털로부터 외부 사이트로의 로그인 가능해진다.

마이나포털의 어카운트와 외부 사이트의 어카운트를 연계시켜 줌으로서, ID 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외부 사이트에 로그인(싱글 사인온)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진다.

### 5. 대리인에 의한 이용에 대해서

사전에 대리인을 등록해 둠으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마이나 포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대리인의 등록

대리인을 등록하는 때는, 이용자와 대리인이 동석하여, 이용자가 마이나포털에 로그인한 후에, 대리인의 【마이넘버카드】를 인증하여, 이용자와 대리인을 연결한다. 한사람의 이용자에 대하여, 복수의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다.

#### (2)대리인에 대한 대리 권한의 설정

대리인설정에서는, 위임하는 기간과 서비스(정보제공 등 기록 표시, 자기정보 표시, 알림 표시)의 선택, 메일 통지의 희망 유무를 선택한다.

#### (3)위임하는 특정 개인정보의 설정

자기정보표시에 있어서, 대리인에 위임하는 특정 개인정보에 대해서, 체크박스 형식으로 선택을 한다.

권한을 위임중에 추가, 변경, 삭제를 할 경우는,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설정 변경할 수 있다.

#### (4)대리인의 유효기간

대리인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최대 2년간 이다.

대리인의 실효 시기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일이 된 때에 경고 연락이 마이나 포털 화면위로 표시된다.

### 6. 마이나포털의 안전대책

수 많은 안전대책으로, 개인정보를 지킨다.

(1) 높은 보안

마이나포털의 로그인시에는, 【마이넘버카드】의 이용자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하여, ID·PASS 보다도 높은 인증 수준에서의 본인확인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본인인체 하는 시늉을 막고, 높은 보안을 확보한다.

(2) 액세스권을 엄격하게 관리

첫 회의 어카운트 개설시에 일시 저장영역인 이용자 폴더가 개설되며, 이 영역에의 액세스권은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에 의해 엄격하게 확인된다. 이 이용자 폴더에 저장되는 정보는, 이미 읽은 상태의 마이나포털로부터 로그아웃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하면, 이용자 폴더로부터 삭제되어, 참조할 수 없게 된다.

(3) 조작 이력을 확인 가능

과거의 마이나포털의 조작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기억이 나지 않는 조작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4) 남으로부터 엿보기를 방지

공공 기관 등의 자택이외의 단말기로부터 마이나포털을 이용할 때 등은, 남으로부터 엿보기를 방지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한다.

《참고자료》

2016년 7월 내각 관방 사회 보장 개혁 담당실

「시작해 보자! 마이나포털」

## (1)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 【질문 1】

한국에서는 1962년도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 왔습니다만, 2011년3월29일에 「개인번호보호법」이 제정(2011년 9월30일 부 시행)되기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밖에 없었습니까?

### 【회답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부터 제40 조(과태료)에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8년12월6일 이후 다섯 번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고 법을 위반한 때에는 상응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도 후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1년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도에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2014년도에 주민등록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2015년도에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고, 올해 3월에는 개인정보수집 출처를 고지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질문2】

2. 주민등록법의 (3)신고사항에 있는 「등록기준지」란 무엇입니까?

【회답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를 살펴보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의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주2)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 1 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 1 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주2) 조선반도에서 본관이란, 발상이 같은 동일 부계 씨족집단의 발상지 혹은 종족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조선왕조시대 이후, 사회적, 법적인 위치가 가족제도의 중요요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성과 함께 본관을 사용하고 있다. 생략하여 「본」이라고 해도 좋고, 그 외 「관향」으로 부르기도 한다.

**【질문 3】**

2. 주민등록법의 (6) 주민등록증발행에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기관」이란 어떤 기관입니까

**【회답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기관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을 의미합니다.

**【질문4】**

5. 개인정보보호법의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추진과정②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2011년 1년간 발생한 건수를 합계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를 초과할 정도의 숫자입니다만,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구제 조치는 있었습니까?

**【회답4】**

지난5월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DB)서버가 해킹 해 회원 1,030만 여 명의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수사중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회원정보 1억 건 이상이 새나간 사건으로 수사결과 용역업체 개발자가 카드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구제조치로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본인의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경우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조정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일본에서의 지방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지방공공단체는 어떻게 구분되니까?

보통지방공공단체 (조직, 사무, 기능 등이 일반적, 보편적인 것)	都(도)道(도)府(부)県(현)			
	시 읍 면	(시행령)지정도시	인구50만 이상의 市중에서 시행령에서 지정 (현재20市)	지사로부터 승인, 허가, 인가 등의 사무로서 직접 市가 행한다.
		핵심도시	인구20만 이상의 도시로서 신청에 의거 시행령에서 지정	복지사무에 한하여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시와 같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시행시 특례도시	특례도시 제도의 폐지(2016년4월 1일 시행)시, 현재 특례도시인 도시	없음
		그 밖의 시	인구5만 이상	
	읍 면			
특별지방공공단체	특별구	대도시의 일체성 및 통일성확보 관점에서 도입 동경도		

**【회답5】**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광역자치단체

(1) 특별시: 서울특별시

\*국무총리 직할이며,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다.

(2)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광역시는 15자치구와 1개 군을 두고 있다.

\*설치요건에 법적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명 상회 후 설치

\*지방자치법상 하급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3) 특별자치시: 세종(世宗)특별자치시

(4) 도: 경기도외 6 개도

(5)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 기초자치단체

(1) 시·군·구

시, 특정시, 행정시, 군, 자치구, 일반구

\*시는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읍·면·동

읍, 면, 법정동, 행정동, 로(路), 가(街),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리·통

리(里), 통(統)

5 촌·반

촌(村), 반(班)

**【질문6】**

일본의 개인번호카드에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만(발행일 이후 10년 이내 의 생일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회답6】**

유효기한은 없습니다. 분실하여 재교부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 (2)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 【질문 1】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개인번호 12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 【회답 1】

개인번호 12자리 중 왼쪽의 11자리는 주민표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표코드 의 변환으로 생긴 번호입니다. 마지막 1자리는 검사용 숫자이며, 왼쪽의 11자리 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주민표 코드는 무작위로 작성된 숫자입니다.

### 【질문2】

법인번호 13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법인번호만으로 그 법인의 연도별매출내역 및 납세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

### 【회답2】

법인번호 13자리 중 왼쪽의 1자리는 검사용 숫자입니다. 왼쪽의 1자리를 뺀 12자리는, 일본에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회사법인 등 번호 12자리와 일치합니다. 그 이외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회사법인 등 번호와 구별할 수 있도록 12자리의 숫자가 정해집니다.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사이트」에서는, 법인번호, 상호·명칭, 주소 등 3가지 정보를 공표합니다. 매출금액이나 납세상황 등에 대하여는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3】**

개인번호카드에는 IC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동발급기에서 이 카드로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인감증명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그 피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자동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 본인의 지문을 대조한 후 발급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거나 혹은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답3】**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 개인번호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시, 구, 읍, 면의 창구 이외, 편의점의 다기능 단말기에서, 주민표를 복사하거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호적부표의 복사, 각종증명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 4자리 숫자입력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개인번호카드의 IC칩 안에는 필요한 최저한의 정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세정보나 연금급부정보 등 프라이버시적인 높은 개인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